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 ·월 평균보수) (원)	자격 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 자격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주소 정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비고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1			[]예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증 사업장으 로 발송 희망)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2			[]예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증 사업장으 로 발송 희망)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3			[]예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증 사업장으 로 발송 희망)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4			[]예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증 사업장으 로 발송 희망)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 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 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지역연금 부호]

1.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종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비고 부호]

01. 대학시간강사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채 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채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직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 전기·전자 관련직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직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직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직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03. 금융, 보험 관련직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직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직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직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직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직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증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6. 재료 관련직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새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직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직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직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직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직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직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직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 화학 관련직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직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6. 보건·의료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직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유무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신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심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